2018 ARPS 교재 연례개정

# 3권. 은퇴설계 상담 실무

<table>
<tr><th>교재</th><th>수정 전</th><th>수정 후</th><th>비고</th></tr>
<tr><td>48p<br>표 1-18</td><td>인턴참여자:<br>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자</td><td>인턴참여자:<br>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45세 이상자</td><td>문구 수정</td></tr>
<tr><td>48p<br>하 4</td><td>6개월간(월 65만원)추가 지원한다.</td><td>6개월간(월 60만원)추가 지원한다.</td><td>문구 수정</td></tr>
<tr><td>92p<br>하 4<br>~<br>93p 전체</td><td><strike>웰타잉에 대한 논의가 ~ 환자의 의사(意思)로 인정한다.</strike>(삭제)</td><td>[첨부1] 참조</td><td>내용 수정</td></tr>
<tr><td>94p<br>표 1-38</td><td>표 1-38</td><td>[첨부2] 참조</td><td>문구 수정</td></tr>
<tr><td>197p<br>하단 표</td><td><table><tr><th>비고</th></tr><tr><td></td></tr><tr><td></td></tr><tr><td><strike>비과세(삭제)</strike></td></tr><tr><td><strike>비과세(삭제)</strike></td></tr><tr><td><strike>비과세(삭제)</strike></td></tr><tr><td>보장자산확보<br>세액공제</td></tr></table></td><td><table><tr><th>비고</th></tr><tr><td></td></tr><tr><td></td></tr><tr><td></td></tr><tr><td></td></tr><tr><td></td></tr><tr><td>보장자산확보<br>세액공제</td></tr></table></td><td>표 수정</td></tr>
</table>

(첨부1)
웰다잉에 대한 논의에서 연명의료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이란 더 이상의 치료적 행위가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생명유지 장치를 철회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적 활동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 을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16년 2월 3일에 법률로 제정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으로 기존의 안락사나 존엄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안락사 또는 존엄사의 문제를 입법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 원칙은 첫째,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1항). 둘째,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제3조 제2항). 셋째,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등 세 가지이다.

• 연명의료중단의 허용요건
연명의료중단의 허용요건은 첫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의 대상이어야 하며, 둘째, 이에 대한 환자의 의사(意思)가 있어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 가족에게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의사(意思)를 전달하여야 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제1호).

•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意思)확인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자의 의사(意思)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도 상정하여 입법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의료지시(Advance Directives)라고 불리는 것으로 미리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자연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시 효력이 있는 기관들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해두었다.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Physician Order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POLST)는 환자 본인 및 가족과 합의한 후 결정된 계획에 대한 의사(醫師)의 의료적 결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意思)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첨부2) 표 1-38

표 1-38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br>Advance Directives(AD) | 연명의료계획서<br>POLST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
|---|---|---|
| 작성대상 | 모든 성인 | 임종에 임박한 중환자 |
| 서식완성의 책임 | 환자 | 의사 |
| 양식의 의미 | 사전 유언 | 의료행위에 대한 명령 |
| 활용 시점 | 미래 | 현재 |
| 기록관리 책임 | 환자/가족 | 의료기관 |
| 대리결정 | 허용되지 않음 |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

※ 출처 : 허대석(2013), 존엄사와 안락사, 기고문